

# 석유유통부문 규제합리화에 대한 의견

## - 대한석유협회 -

**대한** 석유협회는 지난 7월 6일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전전에 따른 석유유통부문 규제 합리화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동자부에 제출했다.

의견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현재 국내 정유업계는 국내 석유류 수요증가 및 수요 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정제시설의 증설 및 시설고도화 사업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 석유류 안정공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,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정이 발효되면 석유 유통분야에 대한 개방화, 규제완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, 수직적 통합화전략을 추구하는 국제석유자본 및 산유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내석유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유통부문의 영세성등은 한국 석유유통업 진출에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. 이와같은 석유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유업계는 시급히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자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혈행 유가관리제도하에서는 수지개선 을 기대하기 어려우며,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혈행

유통구조 하에서는 정유업의 활로개척이 불가한 현실을 감안하시어 정유업의 과제인 「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」을 할 수 있도록 귀 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됩니다.

따라서, 정유업계는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정 발효전에 주유소 허가제의 즉각적인 폐지로 전면자유화, 상표표시제의 조속한 추진 및 3·14 조정명령 해지등 유통관리 제반 법률적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 보호는 물론 외국업체의 경쟁우위체제 확립 및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국내석유유통업의 외국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정유업계가 국내석유수수급의 안정과 양질의 석유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검토과제별 업계의견을 제출하오니 정유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✿

### 검토과제에 대한 의견

| 제 목                  | 방 법                  | 이 유(내용)   | 시 기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
| 1. 주유소 허가제한 완화 및 자율화 | • 전면 자유화<br>(신고제)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비자 이용편의, 서비스 개선 및 품질관리의 혜택</li> <li>• 유통부문의 경쟁부재에 따른 안일한 경영풍토 제거</li> <li>• 주유소의 이권화방지, 부동산투기 억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즉시 시행 |
| 2. 상표 표시제 확립         | • 석유사업법에 따른 법적 상표표시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유사간 경쟁효과(품질, 가격, 서비스 등)의 소비자 전달가능</li> <li>• 석유제품 유통단계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소비자 보호책임의 강화</li> <li>• 정유사에 의한 유통구조 합리화/ 서비스 개선 제고</li> </ul> | • 즉시 시행 |

| 제 목  | 방 법   | 이 유(내 용)   | 시 기  |
|--|---|--|--|
| 3. 3. 14 조정명령 개선 및 폐지                      | • 조정명령 해지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석유의 경제판매를 영위하는 정유회사로서 고유목적사업유지를 위한 유통업 참여는 필수적임</li> <li>• 정유사에 대한 주유소 설치금지는 법률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(정유사 외의 대기업 주유소 취득사례 점증)</li> <li>• 석유업계의 안정공급기반 강화 및 경쟁기반조성</li> <li>• 정유사소유 주유소선도에 의한 가격, 품질등의 소비자보호 책임강화</li> </ul> | • 즉시 시행  |
| 4. 주유소 정유사간 직거래 허용문제                       | • 현행 3단계 유통 구조와 병존하여 직거래도 허용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리점의 존재기능은 시장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맡겨야 할 것임.</li> <li>• 주유소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함</li> <li>• 현실적으로 대리점기능은 필요함</li> </ul>  | • 1, 2, 3항<br>시행으로<br>유통질서<br>확립이후               |
| 5. 휘발유 전용 간이 주유소 및 주차장 주유소 설치허용등 유통망 다원화문제 | • 주유소 허가가 자유화되면 자동 해결   |  | • 주유소 자유화<br>시 관련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휘발유, 등유 가격 자율화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휘발유는 전제품 가격 자유화시 찬성</li> <li>• 등유 가격 자유화 찬성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유가 구조상 휘발유가격 경쟁격화로 인한 정유사의 부담이 타유종 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됨.<br/>(타유종 전가 불능시 정유사 손실 부담 가중)</li> <li>• 계절적 수급불균형이 큰 유종으로서 수급안정 필요.</li> </ul>  | • 1, 2, 3항 시행으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전면 가격 자유화시<br>• 즉시 시행 |
| 7. 경제시설 개조 및 증설 허가제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신고제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요증가 및 수요구조변화추세에 신속대처</li> <li>• 효율적인 시설투자로 경제적인 석유류 안정공급 가능</li> </ul>   | • 즉시 시행  |

